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8. 21. 조정훈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 8. 2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5.9.23.) :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5.11.26.) : 상정 · 제안설명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25.11.27) :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조정훈의원)

현행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되고 있음.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학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대학의 육성을 특별회계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특별회계 예산을 지방대학의 육성 사업과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5조, 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개정안은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고등교육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종료되는 경우, 고등·평생교육 사업은 이전과 같이 일반회계를 통해 예산안이 편성되는데, ①고등교육 부문 정부 예산 지원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대비 여전히 저조한 점이 지속되고 있고, ②세입으로 활용되던 교육세 세입 예산액 일부¹⁾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고등·평생교육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일몰기한을 연장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또한, 최근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징수세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세율 개편에 따라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의 과세표준이 1조원 초과하는 경우 세율을 1%로 인상하여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적절한 성과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국회에 사업성과 및 투자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그 의의가 있음.

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제5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고민정)

조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여 대안반영 폐기 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